



제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시책 강구 의무 부여〉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311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31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태준의원 등 19인
- (2) 제 안 일 : 2025. 5. 1.
- (3) 회 부 일 : 2025. 5.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의 내용에는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의 설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기구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생략) <u><신설></u>	제26조(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의료비 지원, 보조

기구 지원, 보육 지원, 문화·예술 복지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항은 없음.

□ 현재 어린이놀이기구는 대부분 비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애아동은 접근성 제약으로 인해 놀이의 주체로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임.

- 2025년 6월 기준, 전국에 어린이놀이기구는 84,10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무장애 통합놀이기구는 총 8개소로 나타남.¹⁾

- 참고로, 관련 연구에서는 2021년 기준, 전국에 무장애 통합놀이기구가 2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²⁾ 최근 개최된 무장애 통합놀이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4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³⁾⁴⁾

□ 이는 국회가 2008년 12월에 비준 동의하고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장애아동의 동등한 권리 보장) 및 제30조(놀이·여가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에서 요구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임.

1)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시스템. 시설(놀이기구) 통계). <https://www.cpf.go.kr/cpf/ko/nori/0001/index.jsp>, 2025. 6. 28. '무장애' 키워드로 검색)

2) 박현철. (2022). 무장애 통합놀이기구의 놀이기구물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KIPAD 논문집), 68, 13-24.

3)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2025.6.18./ 주최 : 장애아동 인권네트워크, 국회의원 소병훈·김예지·안태준·서미화) (발제 1) 통합놀이기구 조성의 사례와 장애아동 놀이권 보장(조성빈)

4) 2025년 기준 무장애 통합놀이기구 8개소는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시스템」에서 '무장애'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임. 다만, 관련 연구 및 토론회 등에서 파악하고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기구 개소 수는 각각 현장 실태조사 및 관련 단체의 발표 등에 근거한 수치로, 조사 방식 및 기준의 차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조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7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장애아동이 교내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개정안은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강구 의무를 명시하여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장애아동의 통합적 복지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사회참여를 도모하려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입법 목적⁵⁾에 비추어볼 때,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관련 제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입법 체계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장애인이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강구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한편, 최근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무장애 통합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되었음을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참고자료 1: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

- 안태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618호, 2025.1.17.)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기구 설치를 위한 시책 마련을 포함시키고, 시설 설치 시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의 정의에 장애어린이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352호, 2025.5.2.)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가 불편 없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장애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놀이기구 설치자에게는 장애어린이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또는 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기구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에서 놀이기구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으로 어린이놀이기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는 것은 법률 체계상 권한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의 실익은 낮아 보임.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2025. 1. 17.)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2025. 5. 2.)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해당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및 제11조).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에 6만여 개의 놀이터가 있음에도 대다수 놀이터가 비장애어린이를 중심으로 설계된 까닭에 장애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장애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이 이용할 놀이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등에 장애어린이가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 9. (생략)	제2조(정의) ----- ----- -----. 1. ----- 어린이(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모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 -----. 2. ~ 9. (현행과 같음)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략) <신 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어린이가 접근, 이용, 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이라 한다)을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생략) <신 설>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자가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도 적합하도록 제1항에 따

<신 설> <신 설>	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리·보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제11조제1항-----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제11조제1항-----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 ⑤ (생 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1조제1항----- ③ ~ ⑤ (현행과 같음)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